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의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갖추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청약가능.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

구분	74A	74B	84A	84B	합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70%) / 일반공급(30%)	6/3	7/3	38/16	7/3	58/25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선정 방법

소득기준	• 기준 : 140% 이하 (본인,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 적용 (소수점 이하 절상)
선정방법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각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른 우선공급 적용 1. 공급세대수 70% 우선배분(소수점 이하 절상) 1)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 소득기준 10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 120% 이하) 2) 신혼부부 일반공급 30% : 소득기준 14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 160% 이하) 2. 신혼부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1)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및 「민법」 제855조 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 가. 거주기간 우선요건을 충족한 자 (※ 대구시거주자 우선) 나.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다.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521,049원~ 10,529,467원	7,947,892원~ 11,127,047원	8,374,735원~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9,025,259원~ 12,033,677원	9,537,470원~ 12,716,626원	10,049,682원~ 13,399,57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N-8), 100%기준} ※ N→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년)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